

고성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81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9. 1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9. 2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10.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제정이유

-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 등에 대한 도로교통법에서 위입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주·정차금지구역중 견인지역을 따로 지정·고시(안 제2조제1항)
나. 견인대상자동차 지정(안 제2조제2항)
다. 불법 주·정차의 견인을 고성군에서 운영하는 견인자동차와 대행법인 등을 이용한 견인(안 제3조)
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는 소요비용 납부(안 제5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재정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주·정차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 이동 조치를 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견인지역과 견인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견인대상 자동차의 견인은 고성군수가 직접 견인하거나 대행법인 등에서 대행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행법인등의 요건과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고, 견인 및 보관에 따른 자동차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요비용에 대하여는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은 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을 같이 하고 있음.
- 상위 법과의 저촉되는 부분은 없었으며, 현실적으로 시가지내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선량한 운전자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과 대행법인등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 참고로 동조례안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 동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검토한바 견인 대행법인 등의 자격요건, 업무범위, 견인 보관소의 설치, 인력과 장비의 확보, 견인이동·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해야 할 사항, 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 대행법인 등에 대한 개선 명령사항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현시점 상황으로 볼 때 1일 예상되는 견인대상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되는가?
- 답 : 1일 10대 정도 예상됨.
- 문 : 1일 10대 정도인데 다른 업을 겸하는 자가 아니고는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겠는가?
- 답 : 조례와 규칙안 입법예고 이후 3개 업체가 문의한바 있으며, 대행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 : 견인을 하게되면 보관 장소는 어떻게 되는가?
차량 소유자가 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면?
- 답 : 견인을 하게되면 그 차가 있던 장소에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 두게 됩니다.
- 문 : 견인요금에 있어 기본요금외 매 1km 증가시 추가요금이 있는데 보관소가 원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 답 : 주 견인대상이 고성읍 시가지 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기 때문에 보관소의 위치가 고성읍안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 문 : 부득이하게 고성읍이 아닌 먼 지역에서 견인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가?
- 답 : 그때에는 부득이하게 추가요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 문 : 보관요금은 어떻게 되는가?
- 답 : 보관요금은 견인료와는 별도로 공영주차장 요금표(고성군주차장 조례 참조) 1급지 주차요금 기준에 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10.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